

퇴직소득세제 개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세제 개선방안

박한순*

<요 약>

2014년에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퇴직소득공제의 공제율을 종전보다 전반적으로 높이면서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차등공제 형태로 변경하고 또한 산출세액 계산 시 5배수를 12배수 연분연승법으로 변경함으로써, 퇴직급여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높아지도록 하였다. 그 밖에 퇴직소득세 계산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소득개념인 환산급여를 도입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정규정이 퇴직급여별 및 근속연수별 세부담과 전반적인 세부담, 그리고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종전규정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환산급여 대신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를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개선안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자료와 관련하여, 퇴직급여별 및 근속연수별 세부담 분석에서는 모의사례방법을 이용하였고, 전반적인 세부담 및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 분석에서는 국제통계연보에 수록된 개정연도인 2104년의 퇴직소득 자료를 이용하였다. 측정 지표와 관련하여, 조세 누진성은 Kakwani지수와 Suits지수, 소득 재분배는 Reynolds-Smolensky지수와 Pfähler지수로 측정하였다.

퇴직급여별 및 근속연수별 세부담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개정규정의 세부담은 종전규정과 비교할 때 퇴직급여가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한다. 또한 개정규정은 종전규정과 비교할 때 전반적인 세부담 감소와 더불어 누진성 강화와 재분배 개선을 이룸으로써 조세 공정성과 정책 효과성을 동시에 달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속연수 10년을 가정한 퇴직급여기준 소득비례차등공제와 12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하고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개선안은 개정규정과 비교할 때 조세 누진성 강화와 소득 재분배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2014년에 이루어진 퇴직소득세제 개정의 경제적 효과를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다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개정 퇴직소득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퇴직소득세, 퇴직소득공제, 조세 부담, 조세 누진성, 소득 재분배

*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hspark@chungbuk.ac.kr

I. 서 론

2010년도에 들어와서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퇴직 시에 일시금보다는 연금 선택을 유도하는 퇴직소득세제 개정을 수차례 단행하였고, 이에 따라 퇴직소득의 세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2014년에는 정부가 퇴직소득세제를 전면 개정하여 퇴직소득공제의 공제율을 종전보다 전반적으로 높이면서 근로소득공제의 공제율과 유사하게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차등공제 형태로 변경하고 또한 산출세액 계산 시 5배수 연분연승법을 12배수 연분연승법으로 변경함으로써, 퇴직급여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높아지도록 하였다.¹⁾ 이러한 퇴직소득세제 개정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일시금에 대하여 세부담을 증가시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연금 수령을 유도하고자 하는 고령화 사회의 정책기조에 부합한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김수성·성종훈 2014).

2014년에 정부가 마련한 퇴직소득세제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에 비례하여 공제하는 퇴직소득공제의 공제율을 종전의 40% 정률공제율에서 새로운 소득 개념인 환산급여 구간별 100%—35%의 차등공제율로 변경하였다. 즉, 퇴직소득공제의 공제율을 2011년에 종전의 45%에서 40%로 낮춘 이후에 2014년에 정률공제율 형태에서 차등공제율 형태로 변경한 것이다. 또한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 시 2013년에 1배수 연분연승법을 5배수 연분연승법으로 변경한 이후에 2014년에 5배수 연분연승법을 다시 12배수 연분연승법으로 변경하였다.²⁾ 이와 같이 개정된 퇴직소득세제에 의한 퇴직소득산출세액은 퇴직급여 즉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12/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를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환산급여기준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다음 근속연수/12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2014년에 이루어진 퇴직소득세제 개정의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조세 누진성(tax progressivity)은 퇴직급여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높아지게 되므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소득세 부담 측면에서 살펴보면, 새로운 퇴직소득공제제도는 세부담을 줄이게 되는 반면에 12배수 연분연승법은 세부담을 늘리게 되어 두 제도는 상반된 효과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이 퇴직급여별 세부담과 전반적인 세부담, 그리고 세부담의 영향을 받는 소득 재분배(income redistribution)에 미치는 영향은 실증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일시

1)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2014년에 이루어진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6년 1월 1일이다.

2) 본 연구에서는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 시 연분연승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1/근속연수를 곱한 다음 근속연수/1을 곱하는 방식을 1배수 연분연승법, 5/근속연수를 곱한 다음 근속연수/5를 곱하는 방식을 5배수 연분연승법, 12/근속연수를 곱한 다음 근속연수/12를 곱하는 계산방식을 12배수 연분연승법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된 퇴직소득산출세액을 순서대로 각각 1배수 퇴직소득산출세액, 5배수 퇴직소득산출세액, 12배수 퇴직소득산출세액이라 정의한다.

금 수령 대신 연금 수령을 장려한다는 목적에서 2013년에 1배수 연분연승법을 5배수 연분연승법으로 변경하여 퇴직소득의 세부담을 크게 증가시킨 이후에 2016년부터 12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더욱 증가시키게 된다면 사실상 지나친 증세가 아닐 수 없다. 퇴직소득은 장기간 누적된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이므로 매년 발생하는 종합소득과 달리 급격한 누진 과세가 반드시 바람직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퇴직소득세제 연구는 연금소득세제 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에 대하여, 김수성·성종훈(2014)은 연금소득세제의 경우에는 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조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가 크게 증가한 반면에 퇴직소득세제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하여 크게 변화되지 않는 제도적 특성으로 인하여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제시하였다. 퇴직소득세제에 관한 연구로는 김대철(2012)이 2012년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부담을 비교한 연구와 김수성·성종훈(2014)이 5배수 연분연승법 적용을 포함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루어진 퇴직소득세제 개정의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 정도이다. 미국의 퇴직소득세제에 관한 연구로서, Kaplan(2012)은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의 과세상 문제점을 논의하고 세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하여 연금소득세제에 관한 연구는 2010년 이전부터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2010년도 들어서도 전병욱 외(2010), 정유석(2013), 문성훈·김수성(2014), 문성훈·임동원(2014), 김봉환 외(2015), 김원식 외(2016) 등이 연금소득세제의 개선방안과 정책방향 그리고 연금의 확대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³⁾

본 연구에서는 2014년에 이루어진 퇴직소득세제 개정의 경제적 효과, 즉 퇴직소득공제의 차등공제율과 12배수 연분연승법을 도입한 개정규정이 퇴직급여별 및 근속연수별 세부담과 전반적인 세부담, 그리고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개정 전 규정과 비교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2014년에 새로운 소득개념인 환산급여를 도입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를 산출하도록 한 것은 소득세의 기본적인 계산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서, 소득세의 기본구조를 벗어나지 않도록 환산급여가 아닌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를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방안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자료와 관련하여, 퇴직급여별 및 근속연수별 세부담 분석에서는 모의사례방법을 이용하고 전반적인 세부담 및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 분석에서는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개정연도인 2104년의 퇴직소득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세통계연보는 국세청이 매년 국세의 납세 자료를 정리·집계하여 공시하는 통계 자료이다. 측정 지표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세부담은 총평균세율, 조세 누진성은 Kakwani지수와 Suits지수, 소득 재분배는 Reynolds-Smolensky지수와 Pfähler지수로 측정한다.

국세통계연보 자료의 이용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부양가족, 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의 자료가 세부담 계산에 필요하여 분석의 한계가 있는 것과 달리, 퇴직소득의

3) 본 연구는 연금소득세제 연구가 주된 연구목적이 아니므로 연금소득세제 연구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생략하였으며, 연금소득세제의 선행연구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역사적 고찰은 김수성·성종훈(2014)을 참조.

경우에는 퇴직급여와 근속연수 이외에 별도의 소득자별 자료가 세부담 계산에 필요하지 않아 국세통계연보의 요약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가능하다.

2014년에 이루어진 퇴직소득세제 개정의 경제적 효과를 세부담 및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다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개정 퇴직소득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및 선행연구 검토

1. 퇴직소득세 계산구조와 변천과정

가. 퇴직소득과세표준 계산과정

소득세법 제22조에 의하면, 퇴직소득(이하 “퇴직급여”라 한다)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하며, 퇴직소득금액은 이러한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48조에 의하면,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하 “퇴직소득공제”라 한다)은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금액(이하 “근속연수공제”라 한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소득비례정률공제”라 한다), 2106년부터는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금액(이하 “소득비례차등공제”라 한다)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⁴⁾ 환산급여란 퇴직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다음 12/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4조에 의하면,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요약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 계산과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공제 + 소득비례정률공제 또는 소득비례차등공제

나.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는 <표 1>의 근속연수공제와 소득비례정률공제 또는 소득비례차등공제로 구성

4) 종전에는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하는 퇴직소득공제를 통상 소득비례공제라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소득비례정률공제라 하고, 환산급여에 따라 차등공제하는 퇴직소득공제를 전자와 구별하여 소득비례차등공제라 한다.

된다. 소득비례정률공제는 퇴직소득금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하고, 2016년부터 적용되는 소득비례차등공제는 환산급여별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소득비례정률공제의 정률공제율 변천과정을 포함한 퇴직소득공제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퇴직소득공제

제1부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제2부 : 소득비례정률공제와 변천과정	
적용연도	정률공제율
1998년까지	퇴직급여의 50%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퇴직급여의 50%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급여의 75%)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퇴직급여의 50%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퇴직소득금액의 45%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퇴직소득금액의 40%
제3부 : 소득비례차등공제	
환산급여	차등공제율과 공제액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 (3억원 초과분의 35%)

다. 퇴직소득산출세액의 계산구조와 변천과정

소득세법 제15에 의하면,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퇴직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는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즉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퇴직소득산출세액의 계산구조를 변천과정과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퇴직급여에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제에 의한 퇴직소득산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1/근속연수를 곱한 다음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퇴직급여에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제(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퇴직소득산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5/근속연수를 곱한 다음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5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2016년 이후에 발생하는 퇴직급여에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제(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퇴직소득산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다음 근속연수/12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⁵⁾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종전규정과 개정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구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적용되는 종전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산출세액, 즉 5배수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공제 + 소득비례정률공제

소득비례정률공제 = 퇴직소득금액 × 40%

$$\text{퇴직소득산출세액} = \left\{ (\text{퇴직소득과세표준} \times \frac{5}{\text{근속연수}}) \times \text{기본세율} \right\} \times \frac{\text{근속연수}}{5}$$

2016년 이후 적용되는 개정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산출세액, 즉 12배수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공제 + 소득비례차등공제

소득비례차등공제 = 구간별 환산급여에 구간별 공제율(100%부터 35%까지)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표 1> 제3부 참조)

$$\text{환산급여} = (\text{퇴직소득금액} - \text{근속연수공제}) \times \frac{12}{\text{근속연수}}$$

5) 개정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부칙 제25조에 의하면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산출세액과 개정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각각 일정한 비율로 하여 합산하고 2020년부터 개정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산출세액의 100%를 적용한 금액을 퇴직소득산출세액으로 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개정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개정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산출세액의 100%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하였다.

$$\text{퇴직소득산출세액} = (\text{퇴직소득과세표준} \times \text{기본세율}) \times \frac{\text{근속연수}}{12}$$

라. 개정규정의 특징과 종전규정과 비교

개정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산출세액은 종전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산출세액과 비교할 때 세부담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퇴직소득공제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환산급여를 기준으로 차등공제율을 적용하여 과세가 누진적으로 이루어지며, 35% 공제율을 제외하고는 종전규정의 40% 공제율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35% 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세부담이 종전보다 감소하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12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함으로써 종전규정의 5배수 연분연승법보다 높은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전반적인 세부담이 종전보다 증가하는 효과를 갖는다.

결국 개정규정에서는 퇴직급여가 높을수록 퇴직소득공제의 낮은 공제율과 12배수 연분연승법에 의한 높은 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급여 규모에 따른 세부담 격차가 종전보다 확대된다. 다만 퇴직소득공제의 공제율 상향조정과 12배수 연분연승법은 세부담 측면에서 상반된 효과를 갖게 되어, 이러한 퇴직소득세제 개정이 퇴직급여별 세부담은 물론 전반적인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미지수라 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Kaplan(2012)은 미국의 퇴직 후 소득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퇴직일시금 등의 과세현황과 문제점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세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대철(2012)은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2012년에 마련한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의 세제 개편안을 당시의 현행규정과 비교를 통해 평가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하면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세제혜택을 강화한 반면에,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1배수 연분연승법을 5배수 연분연승법으로 변경함으로써 조세부담을 증가시켰다.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의 세부담을 현행규정과 개정안 간에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개정안의 경우 현행규정에 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낮아지고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증가하였으며, 다만 연금수령기간이 짧을수록 대체적으로 연금소득의 세부담이 퇴직소득보다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개정안은 퇴직금의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지만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수성·성종훈(2014)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개정된 퇴직소득세의 문제점을 계산사례를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합리적인 과세근거가 결여된 5배수 연분연승법의 문제점과 5년 미만 단기근로자에 대한 역차별 과세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근속자와 장기근속자에게 각각 다른 배수를 적용하고 또한 퇴직소득세제가 빈번히 개정되는 상황에서 경과된 소득에 대하여는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개정 이후 소득에 대해서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성훈·김수성(2014)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하여 시행중인 공적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에 대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때 과세되는 세제상 문제점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과세되는 퇴직소득세와 비교하여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장 중요한 세제상 문제점은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어 퇴직소득세제에 비하여 세부담이 불리하며 따라서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는 유인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입단계에서는 공제 한도를 늘리고 운용단계에서는 중도 해지에 대하여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며 수령단계에서는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 또는 분류과세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성훈·임동원(2014)은 퇴직연금세제와 관련하여 그 발전과정을 역사적인 접근방법으로 검토하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연금세제와 비교법적인 연구방법으로 분석한 다음, 이를 근거로 하여 시행중인 우리나라 퇴직연금세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퇴직연금은 가입 및 수령 단계에서 세제상 혜택이 부족하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첫째 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 납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둘째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퇴직연금 이외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한 연금소득의 세부담이 퇴직소득의 세부담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소득공제를 인상하는 것이다.

III. 연구 설계 및 세제 개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세제 개선방안

1. 분석 자료, 분석 방법 및 지수 측정방법

가. 분석 자료와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소득비례차등공제와 12배수 연분연승법을 도입한 2014년 퇴직소득세제 개정의 경제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와 관련하여, 첫째와 둘째 분석에서는 모의 사례방법을 이용하였고, 셋째 분석에서는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개정연도인 2104년의 퇴직소

득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세통계연보는 세무서에서 수집한 국세의 납세에 관한 전수 자료를 국세청이 정리·집계하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공시하는 통계 자료이다.

첫째 근속연수와 퇴직급여를 고려하여 퇴직급여별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사례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퇴직급여 1천만원부터 5억원까지 각 퇴직급여별로 그리고 근속연수 1년부터 30년까지 각 근속연수별로 5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한 종전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산출세액과 12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한 개정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퇴직급여별 및 근속연수별 세부담의 정도와 변화 및 추이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둘째 개정규정에서 도입된 환산급여는 소득세제의 기본적인 계산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환산급여가 아닌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소득비례차등공제를 적용하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첫째와 동일하게 모의사례방법으로 퇴직소득별 및 근속연수별로 5배수 또는 12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개선안의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이를 종전규정 및 개정규정에 의한 산출세액과 비교하였다.

셋째 <표 2> 제2부에 제시된 퇴직소득 자료로부터 계산된 퇴직급여 구간별 평균퇴직급여와 평균근속연수를 이용하여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개정규정, 종전규정 및 개선안 간에 그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측정 지표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세부담은 총평균세율, 조세 누진성은 Kakwani지수와 Suits지수, 소득 재분배는 Reynolds-Smolensky지수와 Pfähler지수로 측정하였다.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된 다양한 지수의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대안들을 평가하므로 요약 자료를 이용한 경제적 효과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2014년에 이루어진 개정규정의 경제적 효과를 퇴직소득세 개정 당시의 조세체계를 기준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2014년의 퇴직소득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을 그대로 이용하였다.⁶⁾

<표 2>는 국세통계연보의 연도별 퇴직자수 현황과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2014년의 퇴직급여별 및 근속연수별 퇴직자수 현황이다.

제1부에서 근속연수별 퇴직자수가 각 연도별로 유사한 분포형태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퇴직자는 근속연수 5년 미만이며, 근속연수 10년 이상인 퇴직자는 평균 5% 미만이고 20년 이상인 퇴직자는 평균 1.5% 정도에 불과하다. 특이한 것은 근속연수 20년과 30년 사이의 퇴직자수와 근속연수 30년 이상인 퇴직자수가 유사하며, 특히 2012년부터는 근속연수 30년 이상인 퇴직자수가 더 많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제2부 2014년 자료를 보면, 퇴직급여 1천만원 이하이고 근속연수 5년 미만인 퇴직자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정한 근속연수에서 퇴직급여가 증가할수록 그 수가 감소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근속연수 20년 이상이면 퇴직급여가 그다지 많지 않은 퇴직자가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6) 2017년에는 기본세율 최고세율이 38%에서 40%로 상향되어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면 40% 세율이 적용된다.

〈표 2〉 국세통계연보의 퇴직자수 현황(단위 명)

제1부 : 연도별 및 근속연수별 퇴직자수						
연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인원 합계
2010년	2,582,094	292,076	96,404	19,185	17,472	3,007,231
2011년	2,592,339	270,264	104,173	16,916	13,103	2,996,795
2012년	2,405,851	281,799	86,166	17,634	20,442	2,811,892
2013년	1,712,037	244,474	63,713	15,272	17,212	2,052,708
2014년	1,753,884	277,095	85,834	21,993	32,934	2,171,740
인원 합계	11,046,205	1,365,708	436,290	91,000	101,163	13,040,366
제2부 : 2014년 퇴직급여별 및 근속연수별 퇴직자수						
퇴직급여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인원 합계
1천만원 이하	1,642,517	107,630	6,478	1,205	1,035	1,758,865
1천만원-2천만원	87,379	94,962	9,247	1,437	6,611	199,636
2천만원-4천만원	16,227	52,660	17,977	2,959	8,529	98,352
4천만원-6천만원	3,356	10,096	13,419	1,267	3,912	32,050
6천만원-8천만원	1,518	3,821	8,011	1,419	2,708	17,477
8천만원-1억원	893	2,052	5,557	1,612	2,263	12,377
1억원-2억원	1,578	4,024	12,967	6,411	4,838	29,818
2억원-3억원	261	1,067	8,975	2,639	939	13,881
3억원-5억원	122	539	2,270	2,163	1,163	6,257
5억원 초과	33	244	933	881	936	3,027
인원 합계	1,753,884	277,095	85,834	21,993	32,934	2,171,740

나. 지수 측정방법

조세 누진성을 평가하기 위한 Kakwani지수와 Suits지수, 소득 재분배를 평가하기 위한 Reynolds-Smolensky지수와 Pfähler지수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지수는 그 값이 클수록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가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 재분배는 주어진 세전소득 불공평성 하에서 조세 누진성과 총평균세율에 의하여 결정된다.⁷⁾ 산식에서 지수 측정을 위한 곡선은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자를 나열하고 구한 세전 및 세후소득분포곡선 또는 조세분포곡선으로서, p 는 누적소득자 지분, q 는 누적소득지분을 의미한다. 또한 첨자 X 는 소득, T 는 조세를 의미한다.

Kakwani지수는 Lorenz곡선 $L_X(p)$ 와 조세집중곡선 $L_T(p)$ 사이의 면적으로 측정된다.

7) 자세한 지수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박한순(2016)을 참조.

$$\text{Kakwani지수} = 2 \int_0^1 (L_X(p) - L_T(p)) dp$$

Reynolds-Smolensky지수는 세후소득집중곡선 $L_{X-T}(p)$ 와 Lorenz곡선 사이의 면적으로 측정된다.

$$\text{Reynolds-Smolensky지수} = 2 \int_0^1 (L_{X-T}(p) - L_X(p)) dp$$

Suits지수는 대각선인 비례세선(q)과 조세곡선(tax curve) $R_T(q)$ 사이의 면적으로 측정된다.

$$\text{Suits지수} = 2 \int_0^1 (q - R_T(q)) dq$$

Pfähler지수는 세후소득상대집중곡선 $R_{X-T}(q)$ 와 비례세선(q) 사이의 면적으로 측정된다.⁸⁾

$$\text{Pfähler지수} = 2 \int_0^1 (R_{X-T}(q) - q) dq$$

2. 퇴직소득세제 개정규정과 개선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종전규정과 개정규정의 퇴직급여별 및 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부담

퇴직소득세제 개정규정에 의하면, 퇴직소득공제 계산 시 차등공제율이 환산급여가 3억원을 초과할 때에 적용되는 35%를 제외하고 환산급여 구간별로 100%부터 45%까지 적용되어 종전규정의 정률공제율 40%보다 높아져 세부담이 감소함과 동시에 산출세액 계산 시 12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종전규정에 의한 5배수 연분연승법보다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두 제도가 세부담 측면에서 상반된 효과를 갖는 바, 종전규정과 비교를 위하여 퇴직급여별 및 근속연수별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을 보면, 12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한 개정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산출세액은 5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한 종전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산출세액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우선 각 근속연수별로 퇴직급여에 따른 세부담을 비교하면, 일정한 근속연수에서 퇴직급여가 증가할수록 개정규정의 세부담이 종전규정의 세부담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퇴직급여가 적을 때는 개정규정의 세부담이 종전규정의 세부담보다 작지만 일정한 퇴직급여부터 종전규정의 세부담보다 크게 된다.⁹⁾

8) 세후소득집중곡선과 구별하여 세후소득상대집중곡선이라 칭한다.

9) 근속연수 1년인 경우에는 약 1,500만원부터, 5년인 경우에는 약 7,000만원부터, 10년인 경우에는 약

〈표 3〉 퇴직급여별 및 근속연수별 종전규정과 개정규정의 퇴직소득산출세액(금액단위 천원)

근속연수 퇴직급여	구분	1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00	5배수	639	270	120	0	0	0	0
	12배수	511	124	0	0	0	0	0
20,000	5배수	1,764	630	480	240	0	0	0
	12배수	2,064	460	224	48	0	0	0
30,000	5배수	3,215	1,395	840	600	360	0	0
	12배수	4,240	1,060	464	288	112	0	0
40,000	5배수	5,315	2,295	1,200	960	720	360	0
	12배수	6,710	1,730	860	528	352	128	0
60,000	5배수	9,686	4,095	2,640	1,680	1,440	1,080	720
	12배수	11,650	3,877	2,060	1,170	832	608	384
80,000	5배수	14,246	5,940	4,440	2,760	2,160	1,800	1,440
	12배수	16,590	6,517	3,393	2,370	1,480	1,088	864
100,000	5배수	18,806	8,820	6,240	4,560	2,880	2,520	2,160
	12배수	21,530	10,318	4,982	3,604	2,680	1,670	1,344
140,000	5배수	27,926	14,580	9,840	8,160	6,480	4,500	3,600
	12배수	31,410	18,732	10,262	6,409	5,165	4,070	3,060
200,000	5배수	41,606	26,575	17,400	13,560	11,880	9,900	7,920
	12배수	46,230	33,552	20,443	13,809	9,535	7,941	6,668
300,000	5배수	64,406	48,430	31,800	25,620	20,880	18,900	16,920
	12배수	70,930	58,252	42,157	30,279	22,636	17,999	13,808
400,000	5배수	87,206	71,230	52,800	40,020	33,840	27,900	25,920
	12배수	95,630	82,952	66,857	50,392	40,115	31,199	26,562
500,000	5배수	110,006	94,030	73,800	57,500	48,240	41,580	34,920
	12배수	120,330	107,652	91,557	75,092	59,365	49,566	39,768
퇴직소득 산출세액 합계	5배수	384,821	278,290	201,600	155,660	128,880	108,540	93,600
	12배수	427,829	325,226	243,258	183,987	142,272	114,270	92,457

주 : 표의 수치는 5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한 종전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산출세액과 12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한 개정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산출세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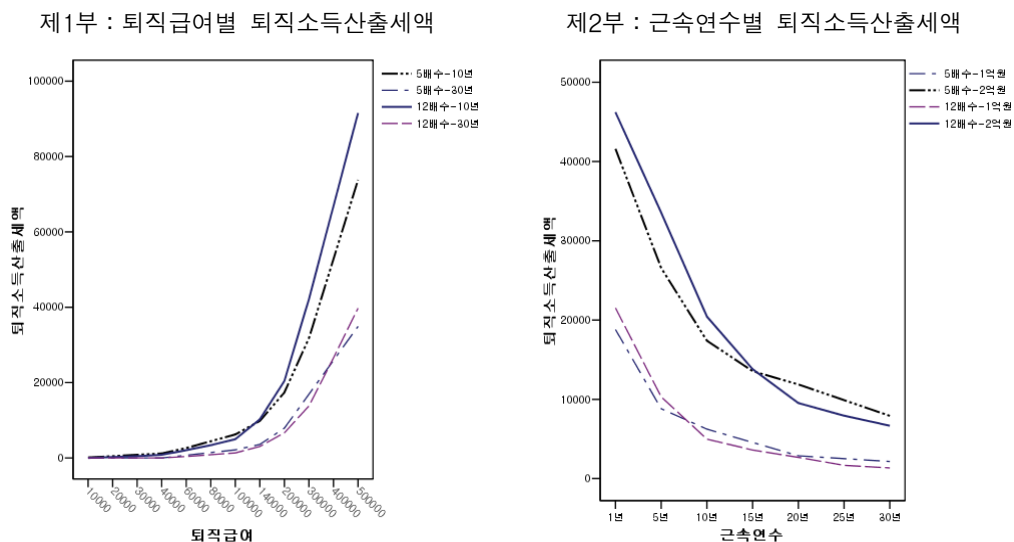
14,000만원부터, 15년인 경우에는 약 19,000만원부터, 20년인 경우에는 약 25,000만원부터 개정규정의 세 부담이 종전규정의 세 부담보다 커지게 된다.

이는 퇴직급여가 높으면 종전규정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12배수 영향으로 종전규정인 5배수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¹⁰⁾ 이 이외에 환산급여가 3억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이 35%로서 종전규정의 40%보다 낮아지는 것도 또 다른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퇴직급여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개정규정의 세 부담이 종전규정의 세 부담보다 감소하는 반면에, 퇴직급여가 4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30년 이상이라도 개정규정의 세 부담이 종전규정의 세 부담보다 증가하는 등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각 퇴직급여별로 근속연수에 따른 세 부담을 비교하면, 일정한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개정규정의 세 부담이 종전규정의 세 부담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함으로써, 근속연수가 짧은 때는 개정규정의 세 부담이 종전규정의 세 부담보다 크지만 일정한 근속연수부터는 종전규정의 세 부담보다 작게 된다. 이는 12/근속연수를 곱하여 환산급여를 산출함으로써 공제율 35%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종전의 정률공제율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은 5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한 종전규정과 12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한 개정규정의 퇴직급여별 및 근속연수별 퇴직소득산출세액 중 근속연수 10년과 30년, 퇴직급여 1억원과 2억원을 비교한 것으로서 <표 3>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종전규정과 개정규정의 퇴직소득산출세액(금액단위 천원)



10) 예를 들어 근속연수 5년이고 퇴직급여 1억원일 때 환산급여는 2억3천만원(1억원×5)을 초과하여, 종전규정의 5배수 연분연승법에서는 24%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반면에 개정규정의 12배수 연분연승법에서는 35% 한계세율이 적용된다.

나. 개선안의 퇴직급여별 및 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부담

개정규정에서 도입한 환산급여 개념은 소득세의 기본적인 계산구조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본 절에서는 소득세의 기본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득비례차등공제의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하되 총급여를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와 유사하게 환산급여가 아닌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퇴직급여별 및 근속연수별로 개선안의 퇴직소득산출세액을 종전규정 및 개정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산출세액과 비교분석하였다.

환산급여 대신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소득비례차등공제의 공제율은 국세통계연보에서 주로 5년 미만인 근속연수분포를 반영하여 근속연수를 5년 또는 10년으로 가정하고 <표 4>와 같이 제시하였으며, 비교를 위한 참고 자료로서 근로소득공제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표 4> 소득비례차등공제 개선안과 근로소득공제

소득비례차등공제				근로소득공제	
환산급여기준	퇴직급여기준		공제율	총급여기준	공제율
	근속연수 5년 가정	근속연수 10년 가정			
8,000천원 이하	3,333천원 이하	6,667천원 이하	100%	5,000천원 이하	70%
8,000천원 초과 70,000천원 이하	3,333천원 초과 29,167천원 이하	6,667천원 초과 58,333천원 이하	60%	5,000천원 초과 15,000천원 이하	40%
70,000천원 초과 100,000천원 이하	29,167천원 초과 41,667천원 이하	58,333천원 초과 83,333천원 이하	55%	15,000천원 초과 45,000천원 이하	15%
100,000천원 초과 300,000천원 이하	41,667천원 초과 125,000천원 이하	83,333천원 초과 250,000천원 이하	45%	45,000천원 초과 100,000천원 이하	5%
300,000천원 초과	125,000천원 초과	250,000천원 초과	35%	100,000천원 초과	2%

<표 4>에서 근속연수 5년을 가정한 퇴직급여기준 소득비례차등공제의 구간은 총급여기준 근로소득공제의 구간과 유사하다. 근속연수 10년을 가정한 퇴직급여기준 소득비례차등공제는 퇴직급여구간이 근속연수 5년의 2배에 해당하여 공제금액도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표 5>는 <표 4>에서 근속연수 5년을 가정한 퇴직급여기준 소득비례차등공제 그리고 5배수 또는 12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선안의 퇴직소득산출세액으로서, 이를 <표 3>의 종전규정 및 개정규정의 퇴직소득산출세액과 비교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퇴직급여별 및 근속연수별 개선안의 퇴직소득산출세액(금액단위 천원)

근속연수 퇴직급여	구분	1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00	5배수	166	124	64	0	0	0	0
	12배수	292	124	64	0	0	0	0
20,000	5배수	766	364	304	208	112	0	0
	12배수	1,136	460	304	208	112	0	0
30,000	5배수	1,494	604	544	448	352	208	64
	12배수	2,459	1,060	544	448	352	208	64
40,000	5배수	2,574	1,100	805	697	592	448	304
	12배수	4,111	1,730	1,111	697	592	448	304
60,000	5배수	6,077	2,703	1,431	1,299	1,167	969	805
	12배수	8,216	3,877	2,676	1,896	1,167	969	805
80,000	5배수	10,133	4,353	3,066	1,959	1,827	1,629	1,431
	12배수	12,396	6,517	4,326	3,546	2,766	1,821	1,431
100,000	5배수	14,313	6,112	4,716	3,306	2,487	2,289	2,091
	12배수	16,576	10,318	6,652	5,196	4,416	3,471	2,526
140,000	5배수	23,232	11,716	8,181	6,711	5,241	3,621	3,411
	12배수	25,495	18,732	12,196	9,397	7,761	6,771	5,826
200,000	5배수	38,052	23,448	15,466	12,561	11,091	9,426	7,761
	12배수	40,315	33,552	25,363	18,757	15,958	12,847	11,541
300,000	5배수	62,752	46,935	31,066	25,222	20,841	19,176	17,511
	12배수	65,015	58,252	49,551	40,995	33,876	28,447	25,336
400,000	5배수	87,452	71,635	53,480	40,822	34,978	28,926	27,261
	12배수	89,715	82,952	74,251	65,180	56,626	49,053	41,480
500,000	5배수	112,152	96,335	76,318	60,420	50,578	44,422	38,266
	12배수	114,415	107,652	98,951	89,880	80,809	71,803	64,230
퇴직소득	5배수	359,161	265,429	195,440	153,652	129,265	111,114	98,904
산출세액 합계	12배수	380,143	325,226	275,990	236,200	204,435	175,838	153,542

주 : 표의 수치는 5배수 연분연승법 또는 12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한 개선안에 의한 퇴직소득산출세액임.

우선 <표 5>를 <표 3>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근속연수 5년일 때 12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한 퇴직소득산출세액은 두 표에서 동일하다. 근속연수가 5년을 초과하면 <표 5>에서 12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한 퇴직소득산출세액이 <표 3>에서 12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한 퇴직소득산출세액보다 커지게 된다. 또한 <표 5>의 5배수 또는 12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한 개선안의 퇴직소득산출세액을 <표 3>의 12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한 개정규정의 퇴직소득산출세액과 비교

할 때, 개선안의 세부담은 12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할 때는 근속연수 5년 이후부터 전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에 5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할 때는 거의 모든 근속연수에서 전반적으로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표 5>에서 12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한 개선안의 퇴직소득산출세액을 5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한 개선안 퇴직소득산출세액과 비교하여 보자. <표 3>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12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함으로써 퇴직급여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그 차이가 확대되고 있으며, 세부담이 동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그 세부담이 5배수 연분연승법에 비하여 크다. 이 때 근속연수에 따른 세부담 차이의 추세나 형태는 퇴직급여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퇴직급여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부담 차이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일정한 근속연수부터 세부담이 동일함을 보이고 있다.¹¹⁾ 이에 비하여 퇴직급여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근속연수 30년을 포함한 모든 근속연수에서 12배수 연분연승법의 세부담이 5배수 연분연승법의 세부담보다 크며, 세부담 차이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증가하다가 일정한 근속연수부터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¹²⁾

결론적으로 연분연승법이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근속연수 5년을 가정한 퇴직급여기준 소득비례차등공제에서는 12배수 연분연승법보다는 5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하는 것이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오지 않게 되며, 근속연수 가정을 5년 이상, 예를 들어 10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과 마찬가지로 12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하더라도 세부담을 크게 증가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¹³⁾

다. 전반적인 세부담, 조세 누진성 및 소득 재분배

소득비례차등공제와 12배수 연분연승법 도입으로 조세 누진성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세부담 측면에서는 공제율 상향조정과 12배수 연분연승법이 상반된 효과를 갖게 되므로 이러한 개정이 전반적인 세부담 및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미지수이다.

퇴직소득세제 개정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개정 연도인 2014년의 퇴직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종전규정, 개정규정 및 개선안의 전반적인 세부담

- 11) 퇴직급여 3천만원인 경우에는 근속연수 10년부터 적용 배수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고, 6천만원인 경우에는 근속연수 20년부터 적용 배수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며, 8천만원인 경우에는 근속연수 30년부터 적용 배수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다. 이보다 짧은 근속연수에 대해서는 12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한 퇴직소득산출세액이 5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한 퇴직소득산출세액보다 크다.
- 12) 세부담 차이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근속연수는 퇴직급여가 높을수록 길어진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 2억원인 경우에는 근속연수 5년, 3억원인 경우에는 근속연수 10년, 4억원인 경우에는 근속연수 15년, 5억원인 경우에는 근속연수 20년부터 세부담 차이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 13) 근속연수 5년 가정 퇴직급여기준 소득비례차등공제와 5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한 개선안에서 발생하는 근속연수 5년 미만인 퇴직소득자의 개정규정 대비 세부담 감소는 공제율 축소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및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를 분석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개선안은 <표 4>의 근속연수 5년 가정 퇴직급여기준 소득비례차등공제와 5배수 또는 12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하고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식, 그리고 근속연수 10년 가정 퇴직급여기준 소득비례차등공제와 12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하고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식 등 세 가지로 하였다.

<표 6> 종전규정, 개정규정 및 개선안의 세부담, 조세 누진성 및 소득 재분배

구 분		총평균세율	조세 누진성		소득 재분배	
			Kakwani지수	Suits지수	Reynolds— Smolensky지수	Pfähler지수
종전규정		0.042895	0.011987	0.179925	0.000956	0.014344
개정규정		0.036026	0.015663	0.245603	0.001426	0.022366
개 선 안	5년 가정 －5배수	0.033447	0.014968	0.220918	0.001224	0.018069
	5년 가정 －12배수	0.048560	0.015687	0.229852	0.002100	0.030773
	10년 가정 －12배수	0.040344	0.016528	0.253950	0.001935	0.029730

우선 12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한 개정규정을 5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한 종전규정과 비교하면, 개정규정의 총평균세율은 0.036026으로서 종전규정의 총평균세율 0.042895보다 낮아져 전반적인 세부담은 감소하였으며, 전반적인 세부담 감소에도 불구하고 Kakwani지수와 Suits지수로 측정된 조세 누진성이 강화되어 Reynolds—Smolensky지수와 Pfähler지수로 측정된 소득 재분배 역시 개선되었다. 결국 개정규정은 전반적인 세부담 감소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증대와 더불어 누진성 강화와 재분배 개선을 이룸으로써 조세 공평성과 정책 효과성을 동시에 달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¹⁴⁾

또한 환산급여 대신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개선안을 비교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근속연수 5년 가정 퇴직급여기준 소득비례차등공제와 12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한 개선안은 총평균세율이 0.04856으로서 종전규정 및 개정규정과 비교할 때 전반적인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소득 재분배가 가장 개선됨을 보이고 있다.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근속연수 5년 가정 퇴직급여기준 소득비례차등공제와 5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한 개선안은 5년 가정—12배수 개선안 및 개정규정에 비하여 전반적인 세부담은 물론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 측정지표 역시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근속연수 10년 가정

14) 김태일·박종수(2010)는 정책 평가의 기준으로서 형평성, 효과성, 능률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퇴직급여기준 소득비례차등공제와 12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한 개선안은 개정규정은 물론 5년 가정-5배수 개선안에 비해서도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 측정지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년 가정-12배수 개선안에 비해서는 조세 누진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총평균세율 감소로 소득 재분배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10년 가정-12배수 개선안은 종전규정 및 개정규정과 비교할 때 총평균세율이 개정규정보다는 높지만 종전규정보다는 낮고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 측정지표가 모두 증가함을 보이는 바,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조세 공평성과 정책 효과성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¹⁵⁾

그 밖에 근속연수 가정과 연분연승법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근속연수 5년 가정에서 5배수와 12배수 연분연승법을 비교하면, 일정한 근속연수에서 연분연승법의 배수 상향으로 총평균세율,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 측정지표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 또한 12배수 연분연승법에서 근속연수 5년 가정과 10년 가정을 비교하면, 일정한 배수에서 퇴직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 상향으로 조세 누진성은 더욱 강화되고 퇴직소득공제 확대에 총평균세율은 감소하며, 다만 소득 재분배는 조세 누진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 감소로 인하여 다소 약화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박한순(2016)이 전반적인 근로소득공제 축소로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조세 누진성이 약화됨에도 불구하고 소득 재분배가 개선됨을 보인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환산급여 대신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소득비례차등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으로서, 5년과 10년 사이의 근속연수와 5배수와 12배수 사이의 연분연승법 중에서 개정규정에 비하여 전반적인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가 약화되지 않는 연수와 배수의 조합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IV. 결 론

2014년에 정부는 퇴직소득세제를 전면 개정하여 2016년부터 시행하도록 한 바, 퇴직소득공제의 공제율을 종전보다 전반적으로 높이면서 근로소득공제의 공제율과 유사하게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차등공제 형태로 변경하고 또한 산출세액 계산 시 5배수 연분연승법을 12배수 연분연승법으로 변경함으로써, 퇴직급여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높아지도록 하였다. 그 밖에 퇴직소득세 계산구조에서 새로운 소득개념, 즉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후 12/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인 환산급여를 도입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를 산

15) 5년 가정-5배수 개선안은 세 부담이 감소하여 노후보장을 위한 세후소득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퇴직소득공제의 공제율을 차등공제형태로 변경하고 산출세액 계산방식을 12배수 연분연승법으로 변경한 개정규정이 퇴직급여별 및 근속연수별 세부담과 전반적인 세부담, 그리고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종전규정과 비교분석하여 세제 개정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소득세의 기본적인 계산구조를 벗어나고 있는 환산급여를 퇴직소득세 계산구조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환산급여가 아닌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를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개선안의 경제적 효과를 종전규정 및 개정규정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자료와 관련하여, 퇴직급여별 및 근속연수별 세부담 분석에서는 모의사례방법을 이용하였고, 전반적인 세부담 및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 분석에서는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개정연도인 2104년의 퇴직소득 자료를 이용하였다. 측정 지표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세부담은 총평균세율, 조세 누진성은 Kakwani지수와 Suits지수, 소득 재분배는 Reynolds-Smolensky지수와 Pfähler지수로 측정하였다.

퇴직급여별 및 근속연수별 세부담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정규정의 세부담은 종전규정의 세부담과 비교할 때 일정한 근속연수에서 퇴직급여가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고 일정한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근속연수 5년을 가정한 퇴직급여기준 소득비례차등공제를 적용하는 개선안의 세부담을 개정규정의 세부담과 비교하면, 12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한 개선안의 세부담은 근속연수 5년 이후부터 전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인 반면에 5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한 개선안의 세부담은 거의 모든 근속연수에서 전반적으로 더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근속연수 5년을 가정한 퇴직급여기준 소득비례차등공제에서는 5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하는 것이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오지 않게 된다.

전반적인 세부담 및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정규정은 종전규정과 비교할 때 전반적인 세부담 감소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증대와 더불어 누진성 강화와 재분배 개선을 이룸으로써 조세 공평성과 정책 효과성을 동시에 달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근속연수 10년을 가정한 퇴직급여기준 소득비례차등공제와 12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개선안은 종전규정 및 개정규정과 비교할 때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조세 누진성 강화와 소득 재분배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서, 5년과 10년 사이의 근속연수와 5배수와 12배수 사이의 연분연승법 중에서 개정규정에 비하여 전반적인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가 악화되지 않는 연수와 배수의 조합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국세통계연보의 요약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소득자별 상세 자료를 이용한 경우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향후 개정규정 시행연도인 2016년 전후 퇴직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한다면 퇴직소득세제 개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대철. 2012. “2012년 연금·퇴직소득세 개편방안 평가—현행과 개정안에 따른 세부담 비교”. 연금연구 제2권 제2호 : 71—91.
- 김봉환·이제복·박상인·신가영. 201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 연금 확대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2호 : 289—308.
- 김수성·성중훈. 2014. “퇴직소득 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4권 제2집 : 73—108.
- 김원식·김우철·김상봉·김재현. 2016. “우리나라 사적연금세제의 정책방향”. 재정학연구 제9권 제4호 : 33—58.
- 김태일·박종수. 2010. “근로소득 조세지출의 수직적 형평성 분석”. 정부학연구 제16권 제3호 : 115—141.
- 문성훈·김수성. 2014. “고령화 사회의 연금 수급 선택 유인을 위한 연금소득 과세 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 제15권 제6호 : 143—182.
- 문성훈·임동원. 2014. “퇴직연금제도의 세제상 혜택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31권 제4호 : 105—131.
- 박한순. 2016. “근로소득세제 개정이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7권 제4호 : 93—112.
- 전병욱·정재현·김노창. 2010. “퇴직연금제도의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1권 제4호 : 67—92.
- 정유석. 2013. “노후소득보장의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세제 개편방안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48집 : 287—310.
- Kaplan, R. L. 2012. Reforming the Taxation of Retirement Income. *Virginia Tax Review* 32 : 327—366.

An Economic Effect Analysis of the Revised Retirement Income Tax System and a Proposal for the Tax System Improvement

Han Soon Park^{*}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revised the retirement income tax system in 2014 as follows, which would be enforced from 2016. First, retirement income deduction rates were increased generally and got lower gradually by retirement income. Second, the annual tax multiplied years method was changed from a 5-multiple to a 12-multiple. Third, new retirement income concept, i.e. conversion retirement income was introduced to calculate retirement income deduction, which was breaking away from the basic income tax structure.

This paper analyses the economic effects of the revised retirement income tax system on the tax burden by retirement income, the overall tax burden, tax progressivity, and income redistribution. In addition, this paper proposes an improved retirement income deduction method, based on the traditional retirement income. With regard to data, the tax burden by retirement income is analysed by simulation methodology, and the overall tax burden, tax progressivity and income redistribution are analysed using the data of the Statistical Yearbook of National Tax in 2014 published by National Tax Service of Korea. With regard to measurement indices, tax progressivity is calculated using the Kakwani and the Suits indices, and income redistribution is calculated using the Reynolds-Smolensky and the Pfähler indic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tax burden of the revised new retirement income tax system increases more as retirement income increases and decreases more as service years increase than that of the former old one. The new tax system compared with the old one can be evaluated as achieving both tax equity and policy effectiveness through tax progressivity reinforcement and income redistribution improvement. The proposed retirement income deduction system applying 10 service year-based deduction rates compared with the revised one can be an appropriate alternative, which will achieve both tax progressivity reinforcement and income redistribution improvement.

This paper is valuable in that it evaluates the economic effects of the revised retirement income tax system using real data and provides a proposal for the tax system improvement.

〈Key words〉 Retirement Income Tax, Retirement Income Deduction, Tax Burden, Tax Progressivity
Income Redistribution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spark@chungbuk.ac.kr